

내부통제기준 신규대비표

항목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60조의2	제2항 1. 제54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55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제3항 1.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%이내로, 매수 주문 횟수(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)는 일간 5회 이내 또는 월간 5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.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7%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	제2항 1. 제49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제3항 1.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%이내로, 매수 주문 횟수(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)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.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%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	관련조항 변경 일간 및 월간 주문 제한 횟수 변경 미실현 평가손실을 기준변경
부칙		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	부칙 추가